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 집담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무엇을 할 것인가?

□ 일 시 : 2019 4월 17(수) 오후 2시

□ 장 소:옛 전남도청 민원실

□ 주 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광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민중당광주시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광주전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시민주권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광주전남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시민플랫폼 나들,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 광주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진도북(춤)놀이보존회내드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광주장애인문화협회,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오월어머니집,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극단 연인, 대동문화재단, 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마당), 상상실현네트워크(청년문화허브, 아모틱, 플리마코, 디자인주스, 디자인컴퍼니 바비샤인, 리얼플랜광주, 문화공동체 한판, 문화기획단 유별라, 문화아지트 에포케, 스토리박스, 와사비, 어하우스공명, 에스홀리데이, 엘리파이브, 청년미래전략센터, 툴아이피1%공작소, 청년문화꾼, 파크인터네셔널, 오월문화기획단 달Comm), 사)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민예총, 광주예총,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 제안배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출범(첨부 1 참조)이후 조성 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견제와 감시, 정책제언 활동이 기본 역할이지만 정권 교체이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의 적극 활용 필요
- 시민연대가 전당, 문화원, 광주시에 제안하여 조성사업의 현 주소를 진단 및 발전방안의 공동 모색 제안
- 연장선상에서 시민연대 대표, 전당장, 문화원장, 광주시의 문화행정 책임 자가 참여하는 대표단 회의와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기획팀을 가동
-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과정의 양 측의 이견이 존재, 행정과 기관은 2018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을 기대한 반면에 시민연대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과 급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자고 제안
- 양 측은 큰 틀에서 공동 프로그램(여는 자리, 라운드테이블, FGI 설문조사, 보고 대회, 공동 실천 등) 기획하고, 2018. 12.5(수)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당에서 여는 자리 개최
- 이후 여는 자리 평가와 향후 사업 논의 과정의 근본적인 의문점 제기
 - * 전당 + 문화원 + 광주시와의 소통과 협력의 방식 및 프로그램이 조성사업 정 상화와 정상화와 전당 활성화를 위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
 - * 전당 + 문화원+광주시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가 아니라, 실적 및 외형에 치중, 회의 운영의 측면에서 책임성 실종
 - * 문재인 정부는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이외의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 효적인 조치 전무, 광주시도 전략의 실종과 향후 계획 부재, 또한 민선 7기 문화정책, 주요 문화기관의 인선은 시민의 문화권 및 문화민주주의 역행
 - * 시민연대도 전당+문화원+광주시와의 사업 중심의 소통과 협력에 치중하면 서 연대기구 설립 취지와 목적을 방기
- 상임공동대표 + 집행위원 연석회의 개최
 - * 전당 + 문화원 + 광주시와의 소통과 협력 모임은 당분간 중단
 - *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 민선 7기 문화 정책 및 인사 등의 진 단을 통한 시민연대의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데 공감
 - *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집담회를 조직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향후 대응 및 실천 방안 수립
- * 집담회 기획 및 준비 과정이 시민연대의 정체성과 조직 재정비와 병행 ○ 2019. 4.17(수)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 집담회 개최

■ 프로그램

사 회 : 윤준혁(상상실현네트워크 사무처장)

<1부>	○ 인사말 ○ 발 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현 주소(광주문화도시협의회)
소통과 공유	(2) 광주 문화정책의 진단과 질문(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3)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행진 : 지역공연예술비평플랫폼)
<2부>	○ 참석자 자유 발언
함께 이야기	○ 향후 계획 공유

■ 목 차

○ 발	표 (1)	광주문화도시협의회	03
○ 발	丑 (2)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13
○ 발	표 (3)	행진 : 지역공연예술비평 플랫폼	19

※ 첨부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소개(요약)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 3. 종합계획 수정(2018~23)요약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현주소, 그리고 개선 방안」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아시이문화중심도시조성시업의 현 주소 및 개선 방안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근간과 정신

- 조성사업은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광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출발한 국책사업이다(아특법 1조 참조)
- 하지만 조성사업은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당초 계획에 비하여 너무 많이 굴절되었으며, 사업의 추진 기간 동안의 낯설음은 정부 ~ 광주시 ~ 시민사회간의 갈등 요인과도 일맥상통한다.
- 국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 예산의 삼박자 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아특법·종합계획은 조성사업의 나 침반이다.
- 아특법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과정의 여러 밀당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초기에는 시민이나 시민문화를 지원과 육성의 대상으로만 접근했으나, 토론과 논의를 거치면서 국가의 지원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주체가되어 조성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명문화 했다는 점이다.
- <u>즉</u>,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정부 ~ 광주시 ~ 시민사회의 협치의 구축 이 지향해야할 근본 가치이며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핵심 정신이다.

②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의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정1)

- 조성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를 화두로 한 국가프로젝트란 점에 서 전국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며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 지역은 초기에 문화수도란 개념의 혼선과 논쟁이 있었지만 조정 과정을 거쳐 지역의 미래와 도시 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전국의 문화계도 최소한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시기까지는 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¹⁾ 조성사업의 4대 역점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나, 전당 건립을 제외한 나머지 역점 과제의 진척률이 미미하고, 주로 정부의 정책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당을 중심으로 정치 지형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과정을 소개하기 위한 자의적인 구분(종합계획의 단계별 구분에 따른 전략 및 과제는 수정계획 요약본 참조)

○ 정부 ~ 광주시 ~ 시민사회는 정치 지형의 변화와 조성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반복되었고,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정 은 크게 여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2003~2004년)>

문화수도론과 문화중심도시론에 따른 정체성, 사업규모(예산), 추진체계 (조성위원회 위상, 정부와 광주시 관계, 시민사회 참여) 등이 주요 쟁점

조성사업은 정부 부처 간 민·관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조성위원회의 실행력 담보 및 위상 강화, 사업 추진체계의 시민사회와의 상설적인 협치 기 구를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음

시민사회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는 유지, 광주시를 견인 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 구조 미비

시민사회와 광주시,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당초 사업 규모의 비해 확장 된 방향으로 정부를 견인하고, 문화가 도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는 담론 형성에는 기여

<2단계 (2005~2007년)>

전당의 건축 설계에 따른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근간인 아특법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에 담아야할 내용 등이 주요 쟁점

중앙과 지역의 다른 권력, 핵심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정 치적 갈등이 지역 내부의 갈등으로 확산

행정, 전문가, 추진단과 인적 네트워크로 연계된 일부 인사가 중심이 되어 배타적인 논의 독점으로 갈등 촉발, 시민사회는 범시민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의 합의안을 만들어 대응했으나 한계

결과적으로 조성 사업의 큰 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실기함.

<3단계 (2008~2010년)>

MB정부 인수위의 조성위원회 폐지 및 추진단 축소를 전제로 직제 개편 시도, 도청 별관 존치 여부, CT연구원 설립 등이 주요 쟁점 정부의 조성사업 축소 시도로 인한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지역은 역량을 모 아 저지를 위한 활동 전개했으나 성과는 제한적

도청별관 존치 여부 논쟁은 조성사업의 블랙홀 현상, 범시민사회단체단체 원탁회의 및 10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법을 마련하였으나 정부와의 협 상을 통해 부분 보존 결론, 지역 사회의 조정력과 정치력 부재

구 도청 별관 보존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 및 시민사회 간의 갈등으로 전당 건립 과정의 주요 쟁점(조직, 콘텐츠, 협업 등)실종

광주시와의 갈등으로 CT연구원 광주 설립의 명분과 실리도 놓침,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 교체되어 관련 사항은 광주시와의 협력이 복원되었고 이후 문산법 개정안으로 이어져 법적 근거 마련

<4단계 (2010~2012년)>

전당의 운영 조직 구성 및 콘텐츠 구축, 법정 종합계획의 수정 보완 및 전당 운영 과정의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 구축 방안이 주요 쟁점

정부의 조성과정의 축소 및 무관심으로 전당 운영 조직 구성 회피,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당의 법인화로 연계되어 정부와 지역 갈등의 뇌관

콘텐츠, 프로세스, 협치 방안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담론이 표출되는 시기 였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논의가 아문단 중심의 제한적으로 전개

전당을 둘러싼 쟁점과 논쟁의 피로에 빠져 문화계를 제외한 시민사회와 시 민의 관심은 저조

<5단계 (2013~2017년)>

전당의 법인화를 전제로 한 아특법 개정 시도, 정부와 지역과의 갈등 및 대립 본격화, 전당의 기관 성격을 둘러싼 논쟁, 최순실 사태 등

전당의 법인화를 전제로 한 아특법 개정안 시도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조성사업 축소 및 폄훼 본격화, 지역은 협의체 시민사회가 망라된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철회 운동 전개

2015년 3월 아특법 개정안 제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전당 조직 이원화와 모호한 규정으로 불씨는 여전, 시행령 개정으로 전당의 운영조직, 아시아문화 원, 추진단의 위상과 규모 대폭 축소되어 전당 개관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조성사업이 지역 사업으로 전락되었고, 도청 별관 활용 문제로 시작된 논란이 도청 훼손 문제로 촉발·확대되어서 옛 전 남 도청 원형복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6단계 (2017 하반기 ~ 현재)>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합의 및 후속 조치 진행, 정권 교체 후 조성사 업을 둘러싼 변화된 정치 환경을 감안한 정상화 방안이 주요 쟁점

정부~광주시~대책위 간의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의 합의(2017. 8월)후 후속 조치 진행(2019. 3월 대국민 설명회)

시민사회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상화시민연대 구성(2018. 3월)을 계기로 전당과 지역과의 협력 촉진 역할 수행(2018 12월 공동 프로그램 진행)하고자 했 으나 현재는 잠정 중단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의 활성화 방안을 공약했으나, 실효적인 조치는 전무하며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

- ☞ 시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조성사업은 중앙과 지방 정부 권력 주체 의 차이와 시민사회간의 이견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실기하였 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지역사업으로 전락
- ☞ <u>현 상황을 방치하면 조성사업은 지역과 정부 간 또는 지역내부 간</u> <u>갈등의 원인이 되는 광주의 골칫거리로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u>
- ☞ 문제의 해결은 아특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과정의 지향해야할 가치와 정신의 회복으로부터 출발

③ 조성사업의 현 주소 진단 및 개선 방안

- 1. 조성사업의 현 주소
- 1) 문제인 정부의 광주전남 대선 공약(2017.4.25. 시의회 브리핑룸)
- 공약 : 광주전남 상생 3대 ·광주 8대 · 전남 8대 약속, 영 ·호남 상생 약속
- 광주 8대 공약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관련 공약 ③④항

<3항> 아시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임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축소·왜곡되어 왔음
- 핵심사업인 문화전당 개관이 5년 정도 지연되면서 7대 문화권 사업도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국제수준의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육성/국내외 예술 인 정주 단지 마련/ 제4차 산업혁명 창의콘텐츠 플랫폼(예술·기술융합센터) 구축/ 문화 ODA 추진

7대 문화권사업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연장과 조성사업 목표기 간 연장: 시효는 2026년(→2031년), 조성사업 목표기간은 2023년(→2028년)

<4항>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송암공단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고성장·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이 필요함.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으로 설립: 국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청사신축을 위한 정부계획 수립

※ <u>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및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은</u> <u>정부의 책임과 의지, 법(제도)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u> 도 관련 노력이 거의 없으며 실효적 조치는 전무

2) 예산을 통해서 드러난 조성사업의 민낯

<총 투자소요 대비 예산 투입 현황(2004~2017년)> 단위(억원)

78	2004~2017(집행)				
구분 -	계	국비	시비	민자	
저다 거리 미 오여	총 투자소요	16,872	13,872	_	3,000
전당 건립 및 운영	총 예산투입	10,376	10,376	_	-
문화적	총 투자소요	17,259	5,451	4,695	7,113
도시환경조성	총 예산투입	419	222	197	-
예술진흥 및	총 투자소요	14,467	6,123	2,302	6,042
문화・관광산업 육성	총 예산투입	2,216	1,022	654	540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총 투자소요	4,314	2,233	899	1, 182
역량 및 위상강화	총 예산투입	451	367	84	-

출처 : 종합계획 수정(2018~23)

전당 건립 및 운영 10,376억 투입(총 투자소요 대비 61.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419억 투입(총 투자소요 대비 2.0%)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사업 2,216억 투입(총 투자소요 대비 15.3%)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강화 사업 451억원 투입(총 투자소요 대비 10.4%)

-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총 예산 5.3조원(국비 2.8조, 지방비 0.7조, 민자 1.8조)이 투입되며, 이중 2017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3,462억원으로 25.4에 그침.
- 당초 계획에 의하면 현재는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²⁾의 성숙에서 정착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로 최소한 7~80%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나, 진 척률이 25.4%인 것은 비정상화의 현재 진행형
- 조성사업의 재원 구조의 특성상 향후에도 특단의 조치(국비 보조율 70% 확대, 광주의 전략적 재원 투입 등)가 없으면 개선될 가능성은 전무

²⁾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은 전당이 중심이 되어 전당과 도시와의 연계성 및 연속성에 기반을 두고, 기반조성단계(2004~08), 본격추진단계(2009~14), 성숙단계(2015~19), 정착 단계(2020~23)구분

- 3) 아특법 정신의 실종 및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협치 시스템 부재
 - 국책 사업은 △정부의 책임과 의지 △법과 제도의 뒷받침 △안정적
 - 인 재원 투입이 중요하지만,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스템
 - 과 제도화를 통해서 협치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실천 과정을 수반
 -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협력 체계 지속
 - 핵심 추진 체계의 비 효율성 및 시민 참여 시스템 부재
 - 조성위원회, 아문단, 전당 조직 이원화, 시민사회협약위원회 부재 등 ※ 최근 광주시 주도의 문화거버넌스는 프로그램 위주의 행정 편의적
- 4) 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 한계 및 도시와 엇박자
 - 전당의 콘텐츠 연구와 전시·공연 중심의 창제작 기능의 한계
 - 문화전당과 도시의 단절
 - 전당의 전문인력 및 문화도시 광주 내 활동 인력 부족
- 5) 아문도시 시민연대 출범 취지의 표류 및 목적의식적 활동 부재
 -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활동 없이 프로그램 중심의 소통과 협력
 - 전당(문화원)×광주시의 실적 위주의 접근 및 소통의 진정성 결여
- ☞ 현 정부에서도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
- ☞ 광주시, 전략 부재 및 지역 사회의 협치에 기반을 둔 정치력 한계
- ☞ 시민사회/문화계도 활동 부재 와 시민연대 출범 취지 및 목적 표류
- 2. 개선 방안 3)
 - 1) 조성사업의 국책 사업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2) 시민의 참여와 협치(지역의 민주적 개입)의 기반을 둔 조성사업 추진
 - 3) 조성사업 주요 추진체계와 협력 체계의 정상화 및 획기적인 개선
 - 4) 아특법의 시효기간(26~31년) 및 종합계획 목표연도(23~28년) 연장
 - 5) 문화전당 역할 확대와 조직 일원화 및 전문 인력 충원
 - 6) 조성사업 재원 구조의 현실화 및 안정적인 재원 투입

³⁾ 수정 종합계획과 여러 차례 공론의 장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된 내용 중심

④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

- 1. 현 정부의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 어떻게 할 것인가?
- 2. 시민참여와 협치 시스템의 실효적인 방안은?
 - 시민사회협약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3. 전당과 문화원의 이원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020년 3월에 성과 평가를 한 후 문화원으로 전부 위탁(2015년 아특법 개정은 전당의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타협 산물)
 - 조직 일원화 방안은?
- 4.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과 문화전당의 조화 가능한가?
 - 당초에는 5개원 시스템에서 현재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 재편
 - 사실상 세련(?)된 문화시설과 엣 전남도청 복원 공간적 분리
- 5. 문화전당의 역할 확대 및 담아야할 콘텐츠는?
 - 현재 전당 및 문화원의 직제와 인력은 당초 계획에 비해 1/4
 - 전당의 현재 모습에서 미래를 상상, 직제와 인력을 확대한다고
 - 고 달라질 것인가? 아시아성과 지역성의 조화는 가능한가?
- 6. 조성사업 재원 구조 현실성이 있는가?
 -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
 - 시효 기간 및 목표연도 연장이 중요한가? 아니면 지역 주도의 문화적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인가?
- 7. 조성사업 추진 과정의 광주시의 무책임 및 역할 방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 2

광주의 문화정책의 진단과 질문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2019 광주시 업무계획 분석 및 개선 안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 글로벌 아티스트 초청 이벤트(공연,전시 등), 창제작 공연을 선보이는 역할 이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관행화돼버린 한계 노출
- 차별화된 공연이나 전시를 유치하는 일에 갇혀있는 전당 역할의 혁신을 위해서는 '광주라는 장소성이 지닌 아시아적 정체성'을 발현해 아시아 권역과 실질적인 문화적 공감을 이뤄낼 수 있는 핵심 개념의 구현이 필요함
- 전당 구성 5대 원 중의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의 역할 답보상태를 탈피, 창의적 기획을 통해 아시아전당의 중심 기능으로 정착되어야함
- 전당 내 일부 기획자의 자기중심적 역할 또는 관료적 기구 운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기획자들의 창의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장착이 요구됨

2.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혁신 관련

- '문화의 경제적 자원화'를 담당하는 공조직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 과 기능이 베일에 쌓여있어 시민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정보산업진흥원에 기존에 축적된 콘텐츠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물경제 차원에서 점검하고, 문화산업과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어떠한 혁신 책이 필요한지를 새롭게 모색해야 함

3. 프린지 페스티벌 혁신 관련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프린지페스티벌이 '시민향유 거리축제'라는 단순한 기능에 함몰, 충장축제 등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소모성 축제로 전략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음

-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프린지페스티벌을 모체로 삼았음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권의 인디 아티스트 그룹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라는 공연 견본시장 을 통해 아시아전당 주요 공연으로 자리 잡고 세계로 진출하는 본연의 기능 을 회복, '아시아의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관점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함 ○ 프린지 페스티벌의 역할 혼돈에 따른 정체성 상실은 일정 기획자가 페스티벌의 운영을 안일한 사고로 장기간 독점하는 정체된 인력 운용 구조에 서 비롯된 측면이 많음
-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린지페스티벌은 아시아문화전당, 동 아시아문화도시 광주 지정 등 기존 네트워크와 적극 결합해야 함

4.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당시 유네스코의 요구사항이 현재 전혀 반영되 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미디어아트 예술교육, 시민 마인드 조성, 미디어아트 관련 국제교류사업 등 유네스코 요구 의무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 계획이 시급
- 개념이 모호한 프린지페스티벌 등 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미디어아트 관련 페스티벌을 대폭 확장해'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이미지를 글로벌화 하는 전략을 고려해봐야 함

5. '시민향유'에 머문 사업들을 시민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혁신

- 광주시의 대다수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은 현재 '향유'에 머물고 있는 상태 (예산구조 속에서 명확히 드러남)
- 향유 중심의 사업 운영은 문화중심도시 광주라는 시민사회의 인문적 역량 축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도시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임
- 소그룹 중심의 시민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 문화중심도시 '시민다운'역량확장에 정책 집중도를 높여야 함

-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관내 대·중·소 도서관 및 문화원을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예술진흥이이뤄질 수 있는 '문화진흥 맵'의 혁신적인 개조가 필요함
- 시민예술 동아리 활동 진작에 필요한 지원체계(연습장 활용, 예술교사 지원 등) 구축이 필요함

6. 시 문화예술정책 관련 총론

- 문화경제부시장 제도를 도입, 획기적 정책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음
-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정책철학의 부재가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대두됨
- 문화예술정책이 단체장의 선호에 따라 흔들리는 기존의 과오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 문화예술정책실장의 개방형 임용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책임감있게 구 현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타이페이 시 사례 참조)
- 문화예술기관 인사가 시민사회의 불신을 초래해 문화예술 관련 광주시 정책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 문화행정 인력재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주시→문화재단→시민 사회로 사업위탁이 중복되면서 '옥상 옥'구조로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역할 차별화' 가 시급히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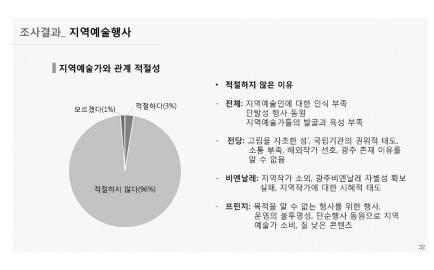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

행진 : 지역공연예술비평 플랫폼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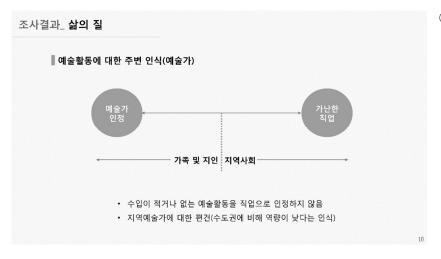
임인자 (<행진:지역공연예술비평플랫폼> 편집장)

- 1. 지역 예술가들의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1) 2017년 예술인백인보프로젝트를 통해 살펴 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현장의 평가



- 고립을 자초한 섬
- 국립기관의 권위적인 태도
- ⊙ 소통 부족
- ◉ 해외작가 선호
- 광주 존재 이유알 수 없음

(2) 지역 예술가에 대한 태도 문제



지역예술가에 대한 편견 (수도권에 비해 역량이 낮다는 인식)

2. 표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1) 인권 평화 등 본 사업 목적 상실, 도시 정책의 축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및 21세기 국가발전 요체인 문화에 대한 특별한 전략에 기초한 대통령 공약과 구상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문화프로젝트 기획·추진되었으나, 지방 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일방향적인 국가 주도로 진행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목적>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운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위한 핵심 거점시설로서 광주를 시발로 하여 전국, 아시아 전체를 위한 문화발전소로 구축

②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지역특성별 거점인 문화권 조성을 비롯, 각종 문화인프라 구축 및 중·소 거점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문화적 흐름 확산
- ③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도시 문화경제의 기반이 되는 예술 진흥,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 고유 브랜 드사업 등을 통해 문화적 고부가가치 창출
- ④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 문화교류 활성화와 도시운영 인력 양성, 시민참여 유도, 도시 마케팅을 통하여 도 시의 문화역량 및 브랜드가치 제고

또한 도시 정책과 맞물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목적과 상관없이 아시아문화전당과 주변 일대로만 한정된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도시 전체가 아닌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역량이집중되면서 파행이 일었고,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이 5대 문화권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 2007년의 계획을 2013년 계획으로 축소 개편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파행을 살펴 볼 수 있다.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당초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계획안>4)

① 문화전당권 (동구): 문화특구 도입, 전당과 주변시설 연계 - 구 전남도청의 상징사업, 예술인 공방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청년 문화공간확충, 예술의 거리 특화 (금남로 프로젝트 연계)

⁴⁾ 출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수립 보고> (대통령 보고자료) 2007.9.27

- ② 아시아문화교류권 (남구): 예술인, 관련단체 등의 문화교류지역
- 창작, 기획인, 인권운동가 체류활동 지원센터, 아시아예술인촌, 아시아음악타운, 아시아문화원거리 조성 등
- ③ 아시아신과학권 (광산구): 아시아 전승지식과 의학분야 집중연구
- 아시아지식연구소, 의학연구소, 과학·디자인 테마박물관 조성 등
- ④ 아시아전승문화권 (남구): 아시아의 전통(놀이)문화 계승
- 전통문화 디지털 자료보존·개발, 국제적인 전통축제 유치 등
- ⑤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북구·광산구): 녹지체계 구축
- 생태문화공원 조성, 아시아자연문화연구센터 설립, 습지조성 등
- ⑥ 교육문화권 (서구): 교육문화(Edu-Culture)의 가치와 철학을 집중
- 에듀파크, 에듀컬처시범학교, 교육연구 시설 유치 등
- ⑦ 시각미디어문화권 (북구) : 첨단 미디어문화 공간
- 미디어파크, 문화예술벨트, 도시역사박물관 등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의 변화>5)

7리 무취긔	Er	게 ㅁ칡긔 미 기어세기
7대 문화권	ا ا	대 문화권 및 사업예시
(2007년 종합계획, 2013년 수정계획)		(2018년 수정계획)
① 문화전당권 -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 투자진흥지구(전일빌딩) 지원시설 구축 ②아시아문화교류권 -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 양림역사문화마을 조성 - 광주음악창작소 조성	①문화전당· 교류권	 아시아근대미술관 건립 사민문화예술촌 조성 광주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아시아 정의로드 조성 도심 유스호스텔 조성 아시아 문화다양성증진센터 설치
③ 아시아신과학권 - 산업단지 아트 팩토리	②융합문화과 학권	▶ 광아트 창의산업 육성 ▶ 융합과학 industry valley 조성
④아시아전승문화권 -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 고싸움 놀이 축제	③ 아시 아공 동체 문화 권	 ▶ 아시아 줄문화축제 개최 ▶ 공동체전승문화기반 교류 및 체험사업 ▶ 아시아 전승문화기술센터 설치 ▶ 아시아 수공예 테마파크 조성
⑤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 전통문화관 건립, 풍류남도나들이 - 무등산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 문화권 조성사업에서 제외, 도시 전체로 확대
⑥교육문화권	④미래교육 문화권	▶ 상상파빌리온 조성▶ 에듀파크 조성▶ 에듀컬처시범학교 및 에듀타운 조성

⑦시각미디어문화권

- 중외공원 아트피크닉
-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⑤ 시 각 미 디 어문화권

- ▶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 ⑤ **시 각 미 디** · 국제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기반 조성
 - ▶ 국제 빛-예술축제 개최

2007년에서 2013년으로 계획이 변화하면서 7대 조성권에는 '창작, 기획인, 인권운동가 체류활동 지원센터, 아시아예술인촌'과 같은 사람에 대한 지원책이 전면 삭제 되었다. 또한 2013년 체계에서 2018년의 변화과정에서도 여전히 권역이 분리된 체계에서 공간 중심으로 정책이 구획되면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와 시민에 대한 참여 즉사람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2) 사람에 대한 정책 부재 (예술가 정책 부재)

공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사람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근 개편하고 있는 인적 사업을 보면 '국제문화교류·시민문화 기획운영·아시아문화 기획, 문화해설사 등'으로 시민 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시아문화기획 부분은 대부분 전시 분야에서는 (전시 테크니션 양성과정) 혹은 공연분야 (시노그래피 양성과정) 등 기술 분야로 치중하고 있어 스스로 기획하고 성찰하며 창작 역량을 길러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현장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을 확충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나 광주 현장 예술가들의 참여 계기, 전문 예술가들의 참여 계기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제문화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도시 브랜드 및 전당 인지도 제고 홍보·마케팅, 인적자원 개발·확충,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6)

- ▷ (국제문화교류와 네트워크) 아시아 권역별 문화장관회의,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등 아시아 예술커뮤니티 구성,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유치 등
- ▷ (홍보마케팅) 홍보관 운영, 언론홍보, 매체광고, 홍보물 제작, 온라인 · SNS, 대학생 기자단, 전당투어 프로그램 등 통해 조성사업 · 문화전당 홍보 및 도시 브랜드 제고
- ▷ (인적자원 개발·확충) 전문인력 양성(국제문화교류·시민문화 기획운영·아시아문화 기획, 문화해설사 등),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 강좌, 시민문화예술교육, 아시아문화아카데미 등
- ▷ (시민 참여) 시민 서포터즈 활동,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터 · 문화방 프로그램 등

⁵⁾ 출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 요약본

⁶⁾ 출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 요약본

3. 현장 예술인 참여 시스템의 부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는 현장 예술인 참여 시스템이 부재한다. 여전히 아시아문 화전당체계는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이사회 등의 참여 시스템이 부재하고, 아시아 문화원의 경우에도 아시아문화원은 현장 예술가의 참여 시스템은 전무하다. 이사회에 의 참여 방식, 혹은 계획 과정에서의 참여 방식이 전무한 상황, 그리고 이러한 참여 역시 공개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 예술가의 참여는 요원하다. 기획단계에서 의 공개적인 참여 방식, 견제가 가능한 사후 모니터링 참여 방식 등의 참여가 필요하 다. 현장예술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용에 있어서 광주 지역 예술가 참여 쿼터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장예술가들을 위한 **예술가들이 직접 우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 다.

<2017년 예술인백인보프로젝트를 통해 본 예술가 상생 방식>

조사결과_ 지역예술행사

상생 방식

- 지역협력형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지역예술가의 참여
- 1회성 행사에 소비할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제작까지 협업해 나가는 과정 설계
- 지역 예술가의 발굴과 성장과정 견인 : 지역과 지역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예술가의 발굴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줄 필요
- 지역 예술가의 대우 형평성
- : 타지역 예술가와 동일한 수준임에도 지역예술가 작가비(작품비, 활동비 등) 산정에 차별
- 소통창구 마련 : 서로 생각의 차를 좁히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 필요
- 지역 예술가의 노력
 - 지역 예술가 또한 배타성을 버리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

조사결과_예술정책(지원받고 싶은 내용)

구분	순위	주요이슈	내용	도출
	1	공간지원	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성공연장 및 연습공간 필요 ② 개인 예술가 창작 공간 임대료 지원 ③ 공간 대관시스템 구축 : 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유휴 공간을 활용. 연계한 대관시스템 구축 ④ 광주 작품이 상설적으로 공연되는 공연장 구축 필요 ⑤ 다양한 장르들이 모이는 레이던시형 지원사업 필요 ⑥ 행정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예술가 중심의 공간운영 필요 ⑦ 복합공간 지원 : 상작, 연습, 교육, 제험, 전시 등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지역 공공기관 및 유휴 공간을 활용 대관시 스템 구축 : 상설공연장: 연습. 전시 등 -다장르 융합 상작공간 레지던시 지원
공통 이슈	2	홍보/마케팅 지원	① 온라인 사이트 개설 : 정보의 취합, 공유, 예매 시스템 ② 오프라인 전용게시판 필요 : 지역 내 주요 거점에 설치	-광주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3	국내 · 외 교류 지원	① 국내・외 교류 기회 확대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 필요	-창작활동기반 국내·외 교류 지원 (프로젝트, 레지던시, 워크숍, 포럼 등)
	4	신진예술가 특화사업	① 신진(정년) 예술가 지원사업 필요 ② 신진(정년) 예술가 대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필요 ③ 활동기반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신진작가 대상 독립지원사업 운영 -신진작가 창작활동 플랫폼(시장) 구축 (쇼케이스, 네트워크, 컨설팅, 홍보 및 판매 등)
	5	역량강화지원	① 지역예술인 창작역량을 위한 작품 제작과정의 역량강화 지원 ② 활동기반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제작과정 지원 -전문가 연계 및 네트워크 지원

구분	주요이슈	내용	도출
	관객지원	① 기업체, 학교, 자치구와의 매칭을 통한 관객지원 필요	- 지자체 정책화 필요
	창작활동비 지원	① 최소 창작활동을 위한 활동비(생계비) 지원	- 중앙정부 지원방향 비교 필요
	장르 기반 전문 기획자 양성	① 장르형 또는 유형별 전문기획자 양성 필요	- 지자체 및 재단 인력양성 방향 전환 모색
기타 이슈	작품 판매 시장 확대 및 지원	① 지자체 작품구대 지원 - 시민의 구매 부담 축소를 통한 지역 예술 시장 활성화	- 지자체 정책화 필요
	다 장르 융합 및 협력 지원	① 장르 간 작가 연계 및 작가. 큐레이터 연계 등 다양한 실험지원 필요 ② 창작 및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지원 필요	- 다장르 융합 창작공간 레지던서 지원
	예산의 집중지원	① 지역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집중지원 방향 모색 필요 ② 일정 기간(최소 3년)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 콘텐츠 육성 지원 필요	- 유사지원형태 분석을 통향 사업 방향 모색

4. 갑과 을로서의 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현장예술가 위계 질서와 관계

최근 도래한 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의 위계에 대한 문제(표현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4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문체부 직속 공무원들이 상층 임원진을 형성하고 전문위원 체계의 관리자 시스템으로 아시아문화원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015-2016년 아시아문화전당 직원의 갑질 문제로 아시아문화원과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고, 또한 아시아문화원과 현장예술가와의 위계 문제, 아시아문화전당 직원 (과장급, 전문위원)들의 위계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다.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당장 사업이 사라지고, 현장예술가는 아시아문화전당에는 발도 못붙이는 상황이 늘 상존하고 있다. 소리 없는 해고, 소리 없는 삭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 과장, 문체부 전문위원 한명의 권한이 너무 과도한 상황에서 아시아문화원이라는 조직, 현장예술가들을 좌우지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이러한 위계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5.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군 복원 문제

5·18에 대한 검열, 옛 전남 도청의 훼손과 파괴가 이제까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자행된 국가의 폭력적 행위였다. 현재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군 복원은 시도민 대책위 등과 협의, 차질 없이 추진 (ㅇ 복원협의회 구성·운영('17.10~) *문체부(전당)-광주시-시도민대책위 /ㅇ 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철저한 고증 통해 원형 복원하되, '민주평화교류원'(보존건물군 내) 운영방안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민와 예술가들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첨부자료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소개(요약)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 3. 종합계획 수정(2018~23)요약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교약

1. 제안배경

-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
-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협치의 복원 필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결성

2. 경과보고

- 1) 제 안~ 출범 기자회견
- 2018. 3. 8(목) :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 개최
- 3.12(월) ~ 3.15(목) : TF팀 운영
- 3.21(수) ~ 4.26(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준)
 - ▶ 광주시민협,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예총, 광주예총, 광주문도협, 상상넷,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준),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 4. 9(월) : 제7기 조성위원회 출범 관련 논평 발표
- 4.17(화) : 아시아문화원장 선임 관련 성명서 발표
- 4.30(월) :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서 발송
- 5.10(목) : 준비위원회 개최
- 5.15(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면담
- 5.17(목) : 아시아문화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 5.24(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2) 출범 ~ 현재

- 5.25(금) ~ 11.30(금) : 시민연대 회의 개최, 기타 현안 대응 등
 - ▶ 상임공동대표+집행위원 연석회의(5회) 및 공동 간사단체 회의(월1회)
 - ▶ 플리마코 협동조합의 브릿지마켓 사업 공동 대응(당초 계획대로 추진)
 - ► 전당×지역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전당×문화원×광주시×시민연대 대표단 및 실행팀 회의(격월)
 - 사업 기획(여는 자리, 라운드테이블, FGI 설문조사, 보고대회, 공동 실천 등)

- 12.5(수): 문화전당×지역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여는 자리 개최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 2019년 2월 : 전당×지역의 상생과 협력 사업 잠정 중단
- 2월 ~ 현재 :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 집담회 기획 및 준비
 - ▶ 상임공동대표+집행위원 연석회의(3회) 및 공동 간사단체 회의(월1회)
- 4.17(수) :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 집담회 개최

3. 주요 사업 및 조직 체계

- 1) 주요 사업
- 시민 주체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
-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및 제도 개선 사업
-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사업
-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대응과 실천 사업
-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지원 활동 등
- 2) 조직 체계(2018. 5.24 출범 기준)
- 명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 구성 : 시민연대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협의체 단체 및 개별 단체
- 체계
 - ► 상임공동대표 : 류봉식(광주진보연대), 허달용(광주민예총) 최규철(광주예총), 장세레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 공동대표 : 참여단체 대표
 - ▶ 집행위원장 : 허달용(광주민예총)
 - ► 집행위원회 : 홍성칠(광주진보연대),박재만(광주시민협),이기훈(광주문도협) 허달용(광주민예총), 송영은(광주예총), 김란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두용(상상넷), 곽복임(광주로)
 - ▶ 공동 간사단체 : 광주민예총, 광주예총, 광주문도협, 상상넷
- 3) 참여단체(자료집 표지 참조)

4. 출범선언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에 조성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우리는 80년 5월의 숭고한 가치와 대동정신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존·상생하여, 광주가 아 시아평화예술도시·아시아문화교류도시·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 는 희망과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하여 끊임 없는 부정과 왜곡, 5월 정신의 검열과 훼손,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으로 폄훼 되는 등 지역 사업으로 축소되어 갈 길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촛불 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의 공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이유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한 산적한 과제와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고, 조성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로 여 겼던 전당장 및 문화원장의 공모와 선임과정, 7기 조성위원회 위촉 과정에서 의 민주성과 다양성의 부재가 그 반증이다.

당초의 목적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소수의 전문가 중심의 사업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광주시·시민사 회와의 전면적인 협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인식의 전환과 사업 추진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의지·법과 제도의 뒷받침·안정적인 재원 투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가치와 지향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사업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던 지난 시기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시 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를 결성하며, 오늘 그 출범을 선언한다.

2018. 5.24(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 2015. 3. 13] [법률 제13218호, 2015. 3. 1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 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 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 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 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 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광주광역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 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광주광역시장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 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 2. 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 항을 포함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제2항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한다.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 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지역문화산업 · 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7.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광주광역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



- 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 을 수정·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광역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 ③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광주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 다.
 -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②광주광역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광주광역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 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
-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광 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 1. 광주광역시의 구청장
 - 2. 광주광역시의 시교육감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 5.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2.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국가와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1조(시민문화 진흥)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창조・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 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문화프로그램 지원
 - 4. 노인・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 5. 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1.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2.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 4. 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 5.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 3. 평화·인권·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 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문화예술・문화교류・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 2. 기업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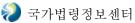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 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 ·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 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④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재정적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 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공고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 정 2008. 2. 29.>
 -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 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수 없다. 〈개정 2009. 1. 30.〉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 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3조·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입주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자금지원 등) ①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광주광역시 및 관할구청은 광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교량·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광주광역시장의 출연 등)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광주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 인 또는 문화산업 등 관련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도와 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
- ②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 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⑤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절 문화교류 활성화

-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 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2. 문화교류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공무원, 청소년, 교사, 시민 등의 초청 및 파견 등 활동 지원
 -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회의의 개최ㆍ유치 지원
 - 4.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시설 등 아시아인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 5. 외국 도시ㆍ기업ㆍ단체와의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의 협력 지원
 - 6. 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

-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다.
 - ②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5. 3. 13.>
 - ②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 3. 13.>
 - ③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5. 3. 13.>
 - 1. 아시아 문화의 연구 · 홍보
 -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및 유통
 - 3.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④문화원에는 문화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할 원장을 두며,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3. 13.>
 - ⑤국가는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3.>
 - ⑥ 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3.>
 - ⑦국가는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 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3.>
 - ⑧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3.>

- ⑨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 3. 13.>
-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3.>

[제목개정 2015. 3. 13.]

제4장 조성사업 추진기구

-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4. 11. 19.>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 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④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 2. 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 제31조(기초조사)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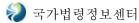
-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광주광역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 ⑤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기존의 조성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 ⑨외국인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
- **제3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07. 12. 27., 2008. 3. 21., 2009. 1. 30.,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 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8.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12.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13.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15.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 16.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 17. 삭제 <2010. 4. 15.>
-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0.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2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 23.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 2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2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2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32.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3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 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 전보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을 3개월(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 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또는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1. 4. 14., 2011. 7. 2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자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영향평가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사업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제37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보고 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인가·검사·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 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8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매매관리업무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③광주광역시장은 당해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광주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 · 운영한다. <개정 2008. 2. 29.>
 -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 8.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운영 수입금
 -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 발원의 설립 등에 대한 지원
 -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 8.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
 -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제43조(차입금)** ①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 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4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4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 에 계상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 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제8장 보칙

-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①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②국가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광주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제50조(감독) ①광주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 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이 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 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9장 벌칙

- 제52조(벌칙)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장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중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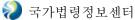
-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②제28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3218호, 2015. 3. 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하다.
- **제3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의 설립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의는 각각 "아시아문화원"의 명의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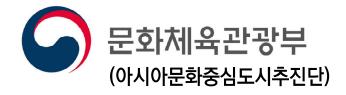
[시행일:2015.3.13]

- **제4조**(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 서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 요약본

2018. 8.



목 차

Ⅰ. 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 수립 배경

- 2007년 종합계획('07.10)에 대한 **2013년 1차 수정계획('13.5)** 이후의 변화 상황 등 반영, **2차 수정계획** 수립
 - * 근거 : 아특법 제 5조③(5년마다 종합계획 수정 보완)
- 향후 5년간(2018~2023년)의 조성사업의 원칙과 방향, 주요내용 제시

□ 추진 경과

- 관계부처·지자체 실무협의('17.3, 기재부 등 13개 기관)
- 수정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17.6.~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착수보고회(7.27.), 중간보고회(10.25.), 완료보고회(12.18.)
- 수정계획 시안 검토 보완('18.1.~3.) / * 전문가 자문회의(수시)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18.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예비검토**('18.5.~6. / 총 3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심의('18.7.31.)

□ 향후 일정(안)

- 관계부처 · 지자체 통보 및 관보 공고(2주간)
- 광주광역시 실시계획 등 수립·제출(매년 11월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개요

- ◇ (성 격) 법정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계획"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원칙·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 연차별 실시계획(광주시), 지원계획(관계부처) 수립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 ◇ (주요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 ◇ (수립경과) '07.10, 기본 종합계획(계획기간 : 2004~2023)'13.05, 1차 수정계획 (계획기간 : 2013~2023)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 추진 배경: '02.12,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공약

□ 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본방향

- ㅇ(비전)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
- ○(정책목표)「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 조성
- 아시아 문화교류도시, 아시아 평화예술도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 구현
- o(실행원칙) 역동적 교류, 창조적 융합, 지속가능한 성장, 열린 공동체

□ 주요 사업계획(4대 역점과제)

-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운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위한 핵심 거점시설로서 광주를 시발로 하여 전국, 아시아 전체를 위한 문화발전소로 구축
- ②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지역특성별 거점인 문화권 조성을 비롯, 각종 문화인프라 구축 및 중·소 거점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문화적 흐름 확산
- ③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도시 문화경제의 기반이 되는 예술 진흥,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 고유 브랜드사업 등을 통해 문화적 고부가가치 창출
- ④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 문화교류 활성화와 도시운영 인력 양성, 시민참여 유도, 도시 마케팅을 통하여 도시의 문화역량 및 브랜드가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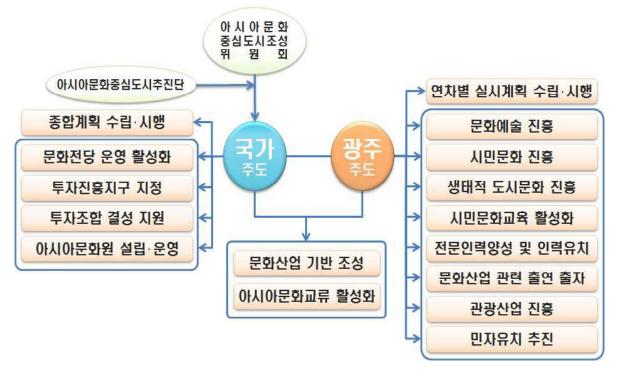
□ 조성사업 투자규모 : 5.3조원

계획기간 : 2004 ~ 2023년(20년간)

ㅇ 재원별 투자소요

구 분	총소요	국 비	지방비	민 자
금액(비율)	5.3조원(100%)	2.8조원(52.8%)	0.8조원(15.1%)	1.7조원(32.1%)

□ 추진체계



□ 주요연혁

- '04. 3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기획단 발족
- '06.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 '07.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04~'23)』확정
- '08. 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착공
- '13. 5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13~'23)』수정(1차)
- '14.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완공
- '15.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 문화전당을 문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아 시아문화원에 **위**탁하며, △설립 5년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
- '15. 7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기관 설립(문체부 직제 개정)
- '15.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11.25)

Ⅲ. 그간의 추진성과와 한계

1

지금까지 가장 뚜렷한 성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 개 관 일 : 2015. 11. 25. /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원

• 규 모 : 지하4층, 지상2층 / 전체 부지면적 134,815㎡, 건축 연면적 161,237㎡

• **사업기간** : 2004 ~ 2017년 * 기본계획('04.8), 착공('08.6), **시설완공('14.10)**, 외곽주치장 ('17.6.)

• **총사업비** : **7,065억원** (보상비 2,694, 공사비 3,964, 설계·감리비 407)

〈시설현황〉 4개원 1극장 ①어린이문화원 · 어린이극장(100석) 아시아문화체험관 어린이콘텐츠연구개발실 어린이창작실험실 ②문화정보원 · 어린이도서관, 다목적홀 아시아문화연구소 · 아시아문화아카데미 - 라이브러리파크 · 강의실(3개), 국제회의실 외곽주차장 · 극장3(248석) ③문화창조원 · 복합전시관(1~6관) 기계조형스튜디오 복합/디지털AV스튜디오

④예술극장

· 극장1(1,120석) · 극장2(512석) ⑤민주평화교류원

· 옛 전남도청 본관 등 보존건물

〈운영체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		관	아시아문화원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업 · 콘 무 · 시·	텐츠 시업 관리(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설운영·유지관리, 국내외 교류협력, 홍보	고 리 감	전당 콘텐츠 사업 운영 및 실행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조	당장 4과 (50명)	독	• 원장 4본부 1연구소 1센터 2부 16팀(96명) + 프로젝트 계약직 60명 내외
예 · 29 산 - 시),362백만원(2018년) 시설운영, 홍보·미케팅 등		• 32,233백만원(2018년, 전액 국고보조금) - 콘텐츠•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성과와 한계

- 국내최대 복합문화예술 시설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
 - 아시아문화교류·교육·연구 및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공연· 유통 등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
- ② 개관이후 국제적 문화예술기관 으로 도약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획·추진
 - '15~'17년, 총 333건의 콘텐츠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르별) 공연 130건, 전시 59건, 교육 40종, 축제·행사 74건, 기타 30건
 - (방식별) 창·제작 및 기획 258건(77%), 초청 75건(23%)
 - △ 전당 설립**의** 근간으로서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 : **49%**(162건)
 - △ 국제적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발돋움을 **위**한 **글로벌 콘텐츠 : 20%**(65건)
 - △ 지역 참여 및 문화향유 수요 대응을 위한 지역 친화적 콘텐츠 : 24%(81건)
 - 방문객·관람객도 꾸준히 증가 : 총 610만명(15년 88만, '16년 208만, '17년 314만)
- ③ 그러나, 운영 활성화 및 운영시스템 개선·정착 등 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 특히 지역에서는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요구 지속 제기
 - (현안과제) 아시아문화원(공공기관)과의 이원적 운영구조 개선
 - (지역요구) 전당장 차관급 격상, 운영인력 확대 등
 - < 개관 2주년 계기 '이용실태 및 인식도' 조사결과('17.10, 광주시민 800여명 대상) >
 - •전당을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인식 43.6%
 - ◦전당 방문경험 59.4%, 방문만족도 64.8점, 접근성 65.4점
- ④ 또한, 새로운 현안과제로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군 복원문제 대두
 - 보존건물군 내에 들어선 '민주평화교류원' 개관 차질 및 전당 운영 역량 분산 등 애로 가중 전망

2 문화산업분야 비교적 양호, 다른 과제는 대체로 개선 및 활성화 필요

①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중 '7대 문화권'사업

- 광주를 지역 특성과 역사성·발전성을 토대로 7대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내 문화거점을 집중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목표
 - * ①문화전당권, ②아시아문화교류권, ③아시아 신과학권, ④아시아전승문화권, ⑤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존권, ⑥교육문화권, ⑦시각미디어문화권
- ㅇ 전당 건립에 장기간 역량 집중, 7대 문화권 조성사업 미진
 - *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①문화전당권 → ②아시아문화교류권 → ③아시아 신과학권 → 각 권역으로 순차적 확산계획 차질
- 지역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대표적 부진사례로 지적하며, 계획의 실효성·타당성 문제도 지속 제기

〈주요 추진사업〉

권역별	주요 사업내용		
문 화 전 당 권	▷ 아시아 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대인예술시장, 예술의거i ▷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아시아 전통음식타운 조성, 축제 개최)		
아시아문화교류권	▷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음악당, 주차장, 전망타워, 국제포크음악제)		
아시아신과학권	▷ 산단 아트 팩토리(폐공장 활용 문화시설 조성)		
아시아전승문화권	▷고싸움 브랜드 개발, 아리랑 브랜드 공연		
문화경관생태환경권	▷산(山) 테마 문화스토리텔링(아카이브) 구축		

② 예술진흥 및 관광 분야는 차별화된 아특사업 발굴 부족으로 성과 미흡

- o 예술분야 일부 기반 조성(예, 아시아 창작스튜디오) 및 축제·행사 등 추진
 - * 그러나, **일**부 축제·행사도 초기('07~'13)에만 아특예산 투**입** → **이**후 지특예산 (입방울국악제) 또는 지방비(한중 전통문화교류)로 전환. 아특예산 단절
- ㅇ 관광산업 분야는 아특예산 투입실적 없음

③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위해 비교적 다양한 사업 꾸준히 추진, 그러나 투자는 불충분

○ 국제문화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도시 브랜드 및 전당 인지도 제고 홍보·마케팅, 인적자원 개발·확충,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주요 추진사업〉

- ▷ (국제문화교류와 네트워크) 아시아 권역별 문화장관회의,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등 아시아 예술커뮤니티 구성,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유치 등
- ▷ (홍보마케팅) 홍보관 운영, 언론홍보, 매체광고, 홍보물 제작, 온라인 · SNS, 대학생기자단, 전당투어 프로그램 등 통해 조성사업 · 문화전당 홍보 및 도시 브랜드 제고
- ▷ (인적자원 개발·확충) 전문인력 양성(국제문화교류·시민문화 기획운영·아시아문화 기획, 문화해설사 등),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 강좌, 시민문화예술교육, 아시아문화아카데미 등
- ▷ (시민 참여) 시민 서포터즈 활동,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터 · 문화방 프로그램 등

④ 비교적 추진 양호한 사업은 문화산업 분야

- 이 민자유치가 다소간 이루어진 사업, 지방비 투입도 가장 적극적
- ㅇ 일부 가시적 성과* 창출
 - * 예1)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예비창업자 육성 사업)
 -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분야 시연작품 제작 및 유통 지원
 - ∘ '06~'17년, 총 114개 제작(지원액 총 100억), 144억 매출, 80개사 288명 취·창업
 - * **예2) 국제문화산업창의전**('06~,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비즈니스**의** 場)
 - '17년(9.21~24, 광주DJ센터), 38개국 440개사, 국내외 바**이**어 380명 참가, 관람객 7만명, 수출상담 310백만불, 계약 12백만불 달성

〈주요 추진사업〉

- ▷ (기반조성) 광주 CGI센터 건립(完),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中)
- ▷ (제작·마케팅 지원)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등
- ▷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투자 활성화)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운영 등

예산 종합결과, 지금까지 총 계획대비 25%(1조 3,400억) 투입 - 국비 43%(1조 2,000억), 지방비 12%(935억), 민자 3%(540억) 수준

□ 예산 집행현황

3

O 총 괄 (단위 : 억 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전체계획('04.~'23.)	52,912	27,679	7,896	17,337
전체집행('04.~'17.)	13,462(25.4%)	11,987(43.3%)	935(11.8%)	540(3.1%)

ㅇ 4대 역점과제별

(단위: 억원)

구 분	투자소요(2004~2023)			집행액(2004~2017)				
十 世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52,912	27,679	7,896	17,337	13,462	11,987	935	540
1. 문화전당 건립 • 운영	16,872	13,872	_	3,000	10,376	10,376		
2.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17,259	5,451	4,695	7,113	419	222	197	
3.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14,467	6,123	2,302	6,042	2,216	1,022	654	540
4.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4,314	2,233	899	1,182	451	367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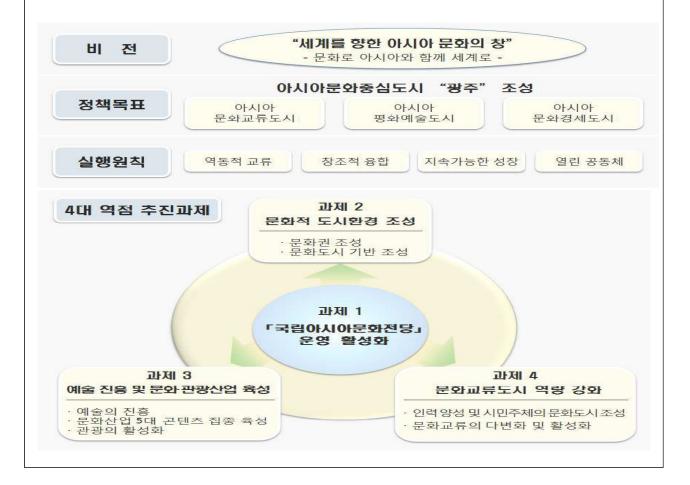
② 예산투입이 미진한 원인

- ㅇ 전당 건립에 장기적 역량 집중, 다른 역점과제 추진 저조
 - 최초계획 대비, 전당 건립 5년여* 지연
 - * (최초) 2010.5.<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 (수정) 2012.5.<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 → (개관) 2015.11.25. **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란으로 2년여 공사 중지('08~'10)
 - 전당 건립·운영에 국비 1조 376억원 투입(건립비 7,065, 운영비 3,311)
- ㅇ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지방비 투입 부족(계획 대비 11.8%)
 - * 광주시 재정자립도 49.2%, 6대 광역시 중 최하**위**('17년 기준) (△부산 60.1 △대구 56.6 △인천 65.4 △대전 57.1 △울산 69.9)
- ㅇ 국고보조금 실집행 부진도 예산확보를 어렵게 한 원인
 - 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국고보조금 미집행, 이월 → 차년도 예산확보 차절*
 - * (사례) 첨단실감클러스터 조성 '17예산(61억) 전액**이**월, '18예산 삭감(28억→9억)
- 민자유치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계획대비 3.1%)
- 전문가, 지역사회는 **지난 10년간 추진동력 약화**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

Ⅳ. 향후 추진계획(안)

< 기본방향 >

- ◈ 사업기본체계 및 투자규모(5.3조) 등은 기존계획 상의 기본 틀 유지
- ◈ 4대 역점과제별 적극적 개선책 통해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 '운영 활성화'에 초점
 - '7대 문화권' 실효적 개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정상화
 -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분야 특화사업 발굴, 적극 예산확보
 - 문화교류 활성화 등 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체계적 추진
- ◈ 조성사업의 효율화·내실화 병행 추진
 - 종합계획 → 연차별 실시계획 → 예산반영 등 단계적 내실화 검토・추진
 - 기 조성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현황 점검 및 개선 관리



역점과제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주력

- ◇ 아시아문화교류·교육·연구 및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공연· 유통 등 시설 인프라 구축 완료
- ◇ 향후, 운영 활성화와 운영 시스템 개선·정착, 옛 전남도청 복원 등 복합적 과제 극복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과제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내최대 복합문화시설에 걸 맞는 컨텐츠 및 프로 그램 지속 개발, 운영 활성화

미 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교류와 창조의 플랫폼				
비 전	아시아 문화예술의 새로	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	h는 글로벌 문화예술 기관		
전 략	아시아와 지역을 잇는	창제작 문화예술기관으로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으로		
목 표	문화적 교량	거점 공간화	국민행복 지향		
운 영	·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창제작 플랫폼 지향				
	· 아시아 문화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국제문화예술기관으로 육성				
방 향	◦지역사회와 함께 향위	우하고, 함께 성장하 는 기	회의 공간으로 활성화		

2 전당-아시아문화원 이원구조 개선 등 효율적 운영시스템 정착

- 단기적으로 현 체계의 근간은 유지하되, 전당-문화원 운영체계 효율화 도모
- 비효율적 이원구조 개선을 위해 **아특법 개정** 추진
 - 현 아특법* 상 통합시점 : 2020. 4월

1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15.3.13.)
 - 부칙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아시아문화원)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15.4.13)부터 5년(20.4.12)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 기관 위상, 적정 운영인력 등은 일원화 문제와 연계 검토

③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군 복원은 시도민 대책위 등과 협의, 차질 없이 추진

- 복원협의회 구성·운영('17.10~) * 문체부(전당)-광주시-시도민대책위
- 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철저한 고증 통해 원형 복원하되, '민주평화 교류원'(보존건물군 내) 운영방안 함께 검토

역점과제2<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7대 문화권 개편 통해 시업 정상화

- ◇ 7대 문화권 + 문화도시 기반 조성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 7대 문화권은 문화전당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축
 → 그간 부진상황 감안, 적극적 개선 및 사업 반영 통해 활성화 도모

① 7대 문화권 → 5대 문화권 개편

2

- (방향) 2007년 종합계획 수립 이후 환경 변화 반영 및 광주시 도시 계획과의 연계성 제고, 사업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
- (개편안) 통합(문화전당권 + 아시아문화교류권), 제외(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7대 문화권	5대 문화권	비고
문화전당권	문화전당교류권	통합(전당과 주변 문화교류거점
아시아문화교류권	[포작인 6 보표면	유기적 연계)
아시아신과학권	융합문화과학권	명칭변경(4차 산업혁명, ICT융합 문화기술 추세 반영)
아시아전승문화권	아시아공동체문화권	명칭변경(아시아공동체성 강조)
문화경관 • 생태환경보존권	_	특정문화권 제외(도시전체 사업화)
교육문화권	미래교육문화권	명칭변경(미래세대 강조)
시각미디어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변동 없음

○ 권역별 사업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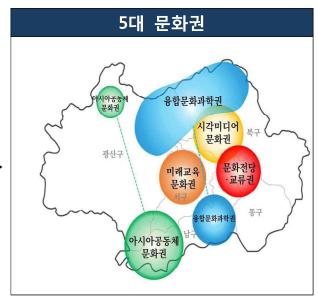
-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괄적·적극적 사업 반영**, 활성화 토대 마련
- 매년도 권역별 핵심사업(1~2개) 우선 추진, 단계적 확대
- * 매년도 실시계획 수립(광주시) 및 검토·승인(문체부) 시 추진여건 및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부지확보·영향평가·투융자심사 등) 면밀 검토, 사업 내실화 및 실행력 제고

② 문화도시 기반 조성

- 5대 문화권과 연계 및 보완, 도시 전체에 문화적 환경 조성 목표
 - △ 건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 △ 공공디자인 고급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만들기 △역사와 문화자산이 살아 있는 도시 만들기 △공원· 녹지·광장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문화예술이 접목된 스마트 도시 구축
- 부처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도시재생사업, 생태도시사업 등)

7대 문화권 → 5대 문화권 개편 및 사업구성(안)





7대 문화권	5대 문화권 및 사업예시		
(2007년 종합계획, 2013년 수정계획)	(2018년 수정계획)		
① 문화전당권 -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 투자진흥지구 (전일빌딩) 지원시설 구축 ②아시아문화교류권 -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 양림역사문화마을 조성 - 광주음악창작소 조성	①문화전당·교류권	 아시아근대미술관 건립 시민문화예술촌 조성 광주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아시아 정의로드 조성 도심 유스호스텔 조성 아시아 문화다양성증진센터 설치 	
③ 아시아신과학권 - 산업단지 아트 팩토리	②융합문화과학권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 광아트 창의산업 육성 ▶ 융합과학 industry valley 조성	
④아시아전승문화권 -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 고싸움 놀이 축제	③아시아공동체문화권	 아시아 줄문화축제 개최 공동체전승문화기반 교류 및 체험사업 아시아 전승문화기술센터 설치 아시아 수공예 테마파크 조성 	
⑤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전통문화관 건립, 풍류남도나들이- 무등산의 탐방프로그램 운영		* 문화권 조성사업에서 제외, 도시 전체로 확대	
⑥교육문화권	④ 미래교육문화권	・ 상상파빌리온 조성▶ 에듀파크 조성▶ 에듀컬처시범학교 및 에듀타운 조성	
⑦시각미디어문화권 - 중외공원 아트피크닉 -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⑤시각미디어문화권	 ▶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 국제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기반 조성 ▶ 국제 빛-예술축제 개최 	

역점과제③<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은 특화사업 발굴 통해 적극적 예산 확보 추진

- ◇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은 모든 도시의 공통된 관심과제로 지특예산・관광기금・지방비 사업 등과 중첩 가능성이 높은 분야
- ◇ 그동안 아특예산 투입 저조, 적극적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이 관건

① 문화예술의 진흥

<기본계획>

3

 창작 활성화 및 향유기회 확대, 전통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육성

<활성화 방안>

- 지역의 강점을 살린 국제적 문화예술행사 육성 및 브랜드화
 - △예시) 광주 비엔날레, 광주 아트페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
 - * 풍부한 미술 기반 활용 **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14.12.)
- 전국적 파급효과와 국제적 공감이 가능한 **특화사업 발굴 추진**
 - △예시)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오월예술축제' 개최
 - * 님을 위한 행진곡 : 관현악 교향곡·창작뮤지컬홀로그램 뮤지컬 제작, 표준기사 번역·보급 등
- 문화예술치유 메카도시 조성
 - △ 예시) 문화예술치유스쿨(Culture & Art Therapy School)* 설립 및 문화예술치유지원센터 운영, 아시아 컬처테라피 네트워크** 구축
 - * 문화예술치유스쿨: 민주·인권운동 관련 피해자,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스포츠(운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활용한 통합치유프로그램을 개발·운영·교육·지원하는 시설로 문화예술치유 지원센터 운영 병행
 - ** **아시아컬처테라피네트워크** : 국내외 문화예술치유 관련 학교, 기관, 단체 등과 정보공유, 인력교류, 아카데미 설립 등 정례화된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
- 호남 전통문화, 남도 무형문화재 등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활용(전남도와 협력)

② 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 문화산업 지원기반 구축,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 5대 콘텐츠(음악, 공예·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집중육성
- □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문화산업 육성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장기적 자생력 확보 목표

<활성화 방안>

- 그동안 추진실적 비교적 양호, 기본계획 상의 추진기조 유지하되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 융복합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 첨단실감 제작 클러스터 조성 추진*
 - * **첨단실감 콘텐츠**: 3D, 초고화질(UHD), 홀로그램 영상 및 가상현실/증강현실 (VR/AR) 등의 첨단기술을 통해 현실과 경험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콘텐츠
 - * **첨단실감 제작 클러스터** 조성: '16~'20년, 총 1,041억(국356, 시500, 민185)
-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운영
 - 문화산업 생태계와 문화산업의 핵심동력을 만들 구심적 역할
 - * 조성사업 기본계획(2007년) 및 1차 수정계획(2013년)에 기 포함된 과제이며 2017년 대선 지역공약 사항
 - ** CT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발**의**('17.7.25., 송기석 전 **의**원)
- 투자조합*·투자진흥지구** 운영 내실화 및 민자 유치 활성화
 - * **투자조합** : 1호(190억), 2호(100억) 기 운영 → 성과에 따라 추가 결성 추진 ** **투자진흥지구** : 문화전당권 등 4곳, 행·재정적 지원 → 통합지원시설 구축 추진
- 대표적 전략 콘텐츠 육성, 통합적 도시이미지 부각 검토 △예시) '첨단영상도시' 광주 * 사례) 부산 '영화', 대구 '게임', 부천 '만화'

③ 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 문화도시의 관광거점기능 강화, 관광홍보체계 개선, 관광서비스 인프라 확충 <활성화 방안>

○ 가치 지향의 미래 관광 패러다임을 이끄는 특화사업 발굴 추진 △예시)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예술관광'*, 아픈 역사현장을 둘러보며 교훈을 얻는 역사교훈여행(Dark Tourism)** 등

* 예술관광 : 미술관 아트투어, 공연관람 여행,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기행 등 ** 역사교훈여행 : 5.18민주화운동사적지, 오월길, 제주4.3항쟁지 등

- 문화전당, 5대 문화권 등 핵심사업과 연계, 관광기반 및 콘텐츠 확충 △예시) 문화전당 주변 트레일 코스(마실길)*, 공정여행**, 사회복지 관광***, 도보여행을 중심으로 한 관광기반과 콘텐츠 프로그램 구축
 - * 보행자길 조성. 스토리텔링 개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등
 - ** 공정여행: 여행자와 여행 대상지의 주민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여행으로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하는 여행. 자연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행이 주 내용
 - *** 사회복지관광(Social Tourism) : 경제적·신체적·시간적인 **이**유 등에 **의**해 관광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기업 등에서 관광비용 지원, 관광시설 및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관광**의** 참여기회 확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서남권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개발

역점과제④<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체계적 추진

- ◇ 국제문화교류, 홍보·마케팅, 인적자원 개발·확충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중이나, 단기적 성과 창출이 어려운 분야
- ◇ 향후 체계적 추진관리 및 지속성 유지가 필요한 과제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 네트워크 확충

4

- 기 구축된 협력망* 체계적 관리 및 교류협력 활성화
 - * 아시아 권역별 문화장관회의,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등 예술커뮤니티 구성,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태지역위 사무국 유치, 아시아청년포럼 등 국제기구 •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망 구축
-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및 협력기반 지속 확대
 - (정부) 국가, 국제기구 / (지자체) 외국 지방정부 및 도시, 주한 외국문화원, 해외 주요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 수교행사·국제대회·국제회의 등 **주요계기 전략적 활용** △ 예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계기 대규모 국제문화행사 개최
-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문화·예술·체육 교류 추진 △예시) 광주 비엔날레,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북한 참가유도 등

②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내적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 시민문화예술교육 통한 **인적자원** 개발·확충
 - (전문인력)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아시아문화기획 전문가, 문화해설사 등
 - (시민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콘텐츠 강좌, 아시아문화아카테미 운영 등
- 정부 ↔ 지자체 ↔ 지역사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 정부·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력 제고
 - 지역사회의 역량을 조성사업의 발전적 동력으로 결집하기 위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방안 강구

③ 도시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한 홍보·마켓팅 지속 추진

- 조성사업 이해 지지기반 확충, 문화전당 인지도・활용도 및 도시브랜드 제고
- 문화도시브랜드협의회(가칭)* 구성·운영, 추진 체계화
 - * 민간전문가 그룹, 문체부(아문단·전당), 광주광역시(산하기관 등) 참여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대효과 >

아시아와 함께 하는 세계문화의 형성 교류 증진을 통한 아시아 문화 공동체 실현

문화를 통한 국가 교형 발전 국가의 문화적 역량 증진 및 문화적 위상 제고

O 시민 삶의 질 증진
이 문화예술의 활성화
이 시민 참여 활성화
O 시민 참여 활성화
O 지역경제 활성화
O 지역경제 활성화
O 지역경제 활성화

T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개 인

- 문화의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문화 향유 및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문화적 잠재력 계발
- 문화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자아 실현

국가

- 문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 창출
-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열린 정체성 형성
- 아시아 공동체 내에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 제고

지역[광주]

- 시민문화활동 및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자본 확대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및 아시아의 우수한 인적자원 유치

아시아

-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증진
- 아시아 각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문화교류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신뢰와 평화 구축

붙임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현황

□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9조

○ **구성인원** : **27인** * 법정인원 : 30인 **이**내(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 민간 위촉직 : 대통령 위촉 13인(아사이문화중심도시조성에 대한 자식과 경험 풍부)

- 정부 당연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14인

o 임 기 : 2년(연임가능)

이 임 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 위원 현황 (77] : '18.4.6.~ '20.4.5.)

	위촉직 위원(13명) * 가나다順	당연직 위원(14명)		
성 명	소속・직책	비고	직 위	비고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과 교수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부위원장
김혜원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부사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위원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위원	교육부 장관	"
남호정	전남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배형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	외교부 장관	"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	행정안전부 장관	"
우운택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환경부 장관	"
정유나	상명대 디자인학과 교수	"	국토교통부 장관	"
최규학	한국외대 초빙교수	"	국무조정실장	"
한승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허 진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	사회수석비서관	"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	"	광주광역시장	"
			전남도지사	"

붙임 2 2차 수정계획 상의 투자소요

(단위 : 억 원)

	구 분	2018~2023년(계획)					
	(4대 핵심 과제별)	계	국비	시비	민자		
	합 계	39,450	15,692	6,961	16,797		
1. 문화	-전당 운영 활성화	6,496	3,496	1	3,000		
	가. 문화전당건립	△93	△93	1	-		
	나. 문화전당운영	6,589	3,589	1	3,000		
2. 문화	-적 도시환경 조성	16,840	5,229	4,498	7,113		
	가. 5대 문화권조성	10,773	3,885	3,150	3,738		
	나. 문화도시기반구축	6,067	1,344	1,348	3,375		
3. 예술	·진홍 및 문화·관광산업육성	12,251	5,101	1,648	5,502		
	가. 예술진흥	2,896	996	510	1,390		
	나. 문화산업육성	5,639	3,321	626	1,692		
	다. 관광활성화	3,716	784	512	2,420		
4. 문화	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강화	3,863	1,866	815	1,182		
	가. 국제문화교류와네트워크	1,920	1,229	206	485		
	나. 홍보마케팅	759	443	- 14	330		
	다. 인적자원개발,확충	325	- 10	335	_		
	라. 시민주체의문화도시조성	859	204	288	367		

붙임 3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조성사업 역할 분담

구 분	세부사업별	추진주체		「아특법」	비고
। र	ペルナンド 日 岩	국가	광주시	근거조항	H -12
조성위원회	· 조성위원회 운영	0		29조	
~ 중L네 히	· 종합계획 수립·시행	0		3조, 5조	
종합계획	·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시행		0	3조, 7조	문체부 승인
국립아시아문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0		27조	
전당 건립 · 운영	.아시아문화원 설립	0		28조	
	. 문화예술 진흥		0	10조	국가지원
세스 기초 미	. 민자유치 추진계획 수립·시행		0	8조	국가지원
예술 진흥 및 문화 · 관광산업 육성	. 문화산업 등 기반조성	0	0	15조	
478	• 투자진흥지구 조성 (지정 · 해제 · 기업이전 촉진 등)	0		16조~18조	
	. 아 시이문화신업 투자조합 결성 지원 및 출자			25조	
	. 문화전당과 이사이문화권 교류네트워크 구축	0		26조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 국가, 국제기구, 국가운영시설과의 교류	0		26조	
강화	. 외국 지방정부 및 도시와의 교류		0	26조	
	. 문화도시 홍보(도시 마케팅)	0	0	종합계획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생태적 도시문화(문화적 도시 환경) 진흥		0	12조	국가 지원

조성사업 관련 부처별 협조사항

	협조부처			구	분		협조 요청 내용	비고
기 재	정		종 ⁶ 소	합계획 요	수정겨 재	획 원	· 수정계획(2018~2023년) 국고 소요예산 지원	
교	육	부	구) 부	전 남 지	도 교 육 활		·시각미디어문화권 내 위치한 구)전남도교육청 부지와 시설을 문화거점 시설로 활용	장기 임대
			국유국	제 치 제 간	기 교 류 협	구및력	· 아시아 문화자원 공유를 위한 지역 협력체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를 위한 지원	
외 교	並	부	공원	적 조	개 추	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적극 추진 아시아 지역 대상 문화예술 분야 공적개발 원조(ODA) 추진을 위한 상호 호혜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법	무	부	아 문 :	시 (화교류	아 역 - 활성		·아시아 문화의 활발한 교류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비자발급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와 특례제도 실시 협조	
국	방	부			공 이 전 활	및	· 마륵동 공군탄약고를 이전하여 교육문화 클러 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 활용 지원 (장기 임대 또는 매각대금 장기분할 상환)	
산 자	업 통 원	상 부	지	자 진 정	흥 지 기	구 업 원		
국교	통		문 기		도 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등 도시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중 기	소 벤 업	처 부	느	사	문 화 산 조 · 운	전 ¹ 참 경 ⁰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등 지원	

1차 수정계획(2013년)**과의 차이점**

구 분	1차 수정계획(2013.5.)	2차 수정계획(안)	비고
ㅁ계획기간	2013~2023 (11년)	2018~2023 (6년)	
ㅁ투자규모	5조2,912억원	5조2,912억원	
- 2004~2017년	(7,557억원)	(13,462억원)	()실투입액
- 2018~2023년	4조5,355억원	3조9,450억원	
ㅁ조성사업 추진단계	기반조성 단계: 2004~2008년(5년) 본격추진 단계: 2009~2013년(5년) 성숙 단계: 2014~2018년(5년) 정착 단계: 2019~2023년(5년)	성숙 단계 : 2018~2020년(3년) 정착 단계 : 2021~2023년(3년)	전당 완공 및 개관에 따른 조성 사업 단계 조정
□「문화전당」 건립・운영	2004~2017년	2018~2023년	
- 전당건립	건립추진	완료	
- 운영활성화	전당 의 옥외공간 및 5개원 시설별 활성화 방안	운영 활성화, 전당-문화원 일 원화, 옛 전남도청 복원	
□ 문화적도시환경 조성			
○7대 문화권 → 5대 문화권	■ 7대 문화권 - 문화전당권 선/#집중하고 아시아문화 교류권을 통해 문화에너지를 전지역 으로 확산		조정
- 문화전당권		- 문화전당교류권	통합
- 아시아문화교류권		- 판와신경파ㅠ천	- 동합
- 아시아신과학권		- 융합문화과학권	명칭변경
- 아시아전승문화권		- 아시아공동체문화권	명칭변경
- 문화경관·생태환경 보존권		<권역제외>	제외
- 교육문화권		- 미래교육문화권	명칭변경
- 시각미디어문화권		- 시각미디어문화권	유지
○문화도시기반조성	한국형 녹색문화컴팩트 시티 조성		
□예술진홍 및 문화· 관광산업육성	CGI센터 운영, CT연구원 설립 및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구체화	CT연구원 설립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 문화산업기반 조성 등 통해 문화 산업 활성화	
□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강화			
○인력양성 및 시민 주체 문화도시	문화예술기관과 의 협력 및 네트 워크 구축 내용보강	– 인력양성 등(계속) – 지역사회 역량 결집→조성시업 활성화	
○문화교류다변화	 아시아 문화자원 공유를 위한 지역협력체(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추가 문화예술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개발 및 지원사업 구체화 	- 문화교류기반 체계적 관리 -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확대 - 국제행사 의 전략적 활용	